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453호

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1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 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. 따라서 인공지능, 로봇, 사물인터넷, 자율주행, 3D프린팅,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우선심사 대상 확대(안 제6조제14호)

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 등록출원

## 3. 의견제출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10월 30일(월)까지**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
디자인심사정책과(우편번호: 302-701)
- 전자우편 : lms21c@korea.kr
- 팩스 (042)472-747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 “입법 예고”를 참고하시거나,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(전화 042-481-5766, 팩스 042-472-747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##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</p>